C - 83 - 2013

- (4)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,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(가) 인양할 하물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.
 - (나)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(또는 보관고)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.
 - (다)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·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.
 - (라)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근로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.
 - (마)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.
- (5) PCT거더 거치 후 상부슬래브에 콘크리트 타설시 자중에 의한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 전문가에 의한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한 작업임을 확인한 후 PCT거더를 인양 거치하여야 한다.

9. 상부슬래브 및 격벽 시공

- (1) 거푸집 주변과 작업발판 위에는 발화물질의 적재 및 화기의 사용을 금하여 야 한다.
- (2) 가공 철근 인양작업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2줄 걸이로 하고, 달줄·달 포대를 사용하여야 하며, 하부 및 부근에는 관계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.
- (3) 돌출된 철근 단부에는 근로자들이 찔리지 않도록 캡 등을 씌워야 한다.
- (4) 근로자들이 철근 조립작업중 바닥 철근에 걸려 전도할 우려가 있어 조립된 철근 상부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슬래브의 양쪽에는 안전난간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.
- (6) 차량 통행구간에는 슬래브 하부에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.